

**부속서 3**  
**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**

**대한민국 양허표**

**대상 품목,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**

1. 이 부속서는 제3.6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,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,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.

2.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.

가.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,

적용범위 : 신선,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

HSK 세번 0201.10.0000, 0201.20.0000, 0201.30.0000, 0202.10.0000, 0202.20.0000 그리고 0202.30.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9,900	9,900	10,098	10,299	10,505	10,716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40.0	40.0	40.0	40.0	40.0	40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0,930	11,149	11,371	11,599	11,831	12,068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0.0	30.0	30.0	30.0	30.0	24.0
이행년도	13	14	15	16	17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2,309	12,555	12,806	13,062	해당없음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4.0	24.0	24.0	24.0	0	

나.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,

적용범위 : HSK 세번 0203.19.1000 그리고 0203.19.9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63	163	166	169	172	176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2.5	22.5	22.5	22.5	22.5	22.5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79	183	187	190	194	해당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5.8	14.6	13.5	12.4	11.3	0

다.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,

적용범위 : HSK 세번 0808.10.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7,500	7,500	7,650	7,803	7,959	8,118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45.0	45.0	45.0	45.0	45.0	45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8,280	8,446	8,615	8,787	8,963	9,142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3.8	33.8	33.8	33.8	33.8	27
이행년도	13	14	15	16	17	18
발동수준 (메트릭톤)	9,325	9,511	9,702	9,896	10,094	10,29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7	27	27	27	22.5	22.5
이행년도	19	20	21	22	23	24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0,501	10,711	10,926	11,144	11,367	11,59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2.5	22.5	22.5	22.5	22.5	22.5
이행년도	25				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해당없음				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0					

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 사과의 총량과 관련된다. 이행 12년차와 그 이후 이행 24년차까지 각 연도에는,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.

라. 아래에 포함된 맥아 및 맥주맥에 대하여,

적용범위 : HSK 세번 1003.00.1000 그리고 1107.10.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4,000	14,000	14,280	14,565	14,856	15,15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			
1003.00.1000	502.0	502.0	479.0	455.0	432.0	408.0
1107.10.0000	263.0	263.0	258.0	252.0	246.0	240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5,457	15,766	16,081	16,403	16,731	17,06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			
1003.00.1000	385.0	361.0	338.0	315.0	291.0	268.0
1107.10.0000	216.0	207.0	199.0	190.0	181.0	139.0
이행년도	13	14	15	16	17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7,407	17,755	18,110	18,472	해당없음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					
1003.00.1000	244.0	221.0	197.0	174.0	0	
1107.10.0000	127.0	115.0	103.0	91.5	0	

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, 부록 2-가-1의 제12항을 참조할 것.

다. 아래에 포함된 감자전분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108.13.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7,900	37,900	38,658	39,431	40,219	41,02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455.0	455.0	436.0	426.0	416.0	406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1,844	42,681	43,535	44,405	45,294	46,199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66.0	351.0	336.0	321.0	306.0	235.0
이행년도	13	14	15	16	17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7,123	48,066	49,027	50,008	해당없음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15.0	195.0	175.0	155.0	0	

바. 아래에 포함된 인삼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211.20.2210, 1211.20.2220, 1211.20.2290,  
1302.19.1210, 1302.19.1220 그리고  
1302.19.129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00	300	306	312	318	32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754.3	754.3	754.3	754.3	754.3	754.3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31	337	344	351	358	36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754.3	754.3	754.3	754.3	754.3	754.3
이행년도	13	14	15	16	17	18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73	380	388	395	403	411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754.3	754.3	754.3	754.3	566.0	566.0
이행년도	19	20			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20	해당없음			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566.0	0				

사. 아래에 포함된 설당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1701.99.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220	220	224	228	233	238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50.0	50.0	50.0	50.0	50.0	50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242	247	252	257	262	268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50.0	50.0	50.0	50.0	50.0	50.0
이행년도	13	14	15	16	17	18
발동수준 (메트릭톤)	273	279	284	290	296	302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50.0	50.0	50.0	50.0	37.5	37.5
이행년도	19	20	21	22	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08	314	320	해당없음	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7.5	37.5	37.5	0		

아. 아래에 포함된 주정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2207.10.901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95	95	96	98	100	102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64.0	264.0	258.0	253.0	247.0	241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04	106	109	111	113	11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17.0	208.0	199.0	191.0	182.0	139.0
이행년도	13	14	15	16	17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118	120	122	125	해당없음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27.0	116.0	104.0	91.8	0	



자. 아래에 포함된 텍스트린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3505.10.4010, 3505.10.4090, 3505.10.5010

그리고 3505.10.509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7,900	37,900	38,658	39,431	40,219	41,024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75.0	375.0	365.0	355.0	345.0	334.0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1,844	42,681	43,535	44,405	45,294	46,199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91.0	275.0	260.0	244.0	228.0	152.0
이행년도	13	14				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7,123	해당없음				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131.0	0				

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, 부록 2-가-1 제15항을 참조할 것.

3. 이 부속서의 목적상,
- 가.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나. 이행 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다. 이행 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라. 이행 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마. 이행 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바. 이행 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사. 이행 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아. 이행 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자. 이행 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차. 이행 1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카. 이행 1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타. 이행 1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파. 이행 1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하. 이행 1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  - 거. 이행 1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.

- 너. **이행 16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1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더. **이행 17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1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러. **이행 18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1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머. **이행 19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1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버. **이행 20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1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서. **이행 21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어. **이행 22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2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저. **이행 23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2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
- 처. **이행 24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2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 그리고,
- 커. **이행 25년차**란 이 협정의 발효 2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.